

# 협약서

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와  
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는  
환경 및 건설기술정보의 유통 활성화에  
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.

2008. 8. 18.

한국환경기술진흥원  
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 
센터장 이성달

이성달

해외건설협회  
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 
센터장 김효원

김효원

**KIEST**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
for action of projects, firms & industry

**ICA** 해외건설협회  
THE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

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와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(이하 양 기관'이라 한다)는 환경 및 건설기술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협약의 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환경 및 건설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,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, 대국민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 및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의 내용)** 양 기관은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양 기관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 및 건설기술정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.
2. 양 기관은 환경 및 건설기술정보 교류 촉진을 위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 파트너로 봉사한다.
3.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.
  - 가. 양 기관에서 발생한 On-Off Line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.
  - 나. 정보공유 이외의 공익적인 활동이 있을 시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진행한다.
  - 다. 양 기관은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동협력 사업을 적극 개발한다.
4. 양 기관은 상호 제공받은 정보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.

**제3조(양도금지)**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**제4조(효력발생 및 기간)** 본 협약은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. 다만, 당사자의 법적 위상이 변화하거나 일방의 명시적인 해지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.

**제5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**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개최 시기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, 필요시 양 기관의 유관부서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**제6조(비용부담)** ① 양 기관은 공익의 공동 실현을 위하여 상호 기사 및 정보를 무료로 제공토록 한다. ② 추후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 기관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. ③ 기타 업무 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분담한다.

**제7조(기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에 관한 사항)** ① 양 기관은 제공 받은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 ② 다만, 양 기관과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협력이 체결된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의 기사 전재 및 재배포는 가능하나, 원 출처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③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기사와 정보를 전재 또는 재배포 할 경우, 양 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④ 또한, 원 출처가 양 기관 이외의 기관일 경우 최초 출처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 기관에 피해를 유발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.

**제8조(비밀보호)**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**제9조(협의조정)**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**제10조(기타사항)** 본 협약서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.